

「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포항시와 (재)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해외 수출물류 관련 비용
- 지원대상**
 - 포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제조시설(공장) 또는 본사를 두며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본사를 두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위탁생산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 ※ ODM(위탁개발생산자)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세부사항 지원내용 참조)
 - 단, 2024~2025년 동 사업을 연속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
 - 지원금 한도 내 기업당 신청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
 - 우대기준 충족 기업에 대해 지원한도 최대 20% 범위에서 상향 적용

II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항목	세부지원내용
국내 운송비	국내 발생 수출운임(컨테이너 운송 등) (* 수출관련 운송에 한함)
국제 운송비	해상 및 항공 운임
창고비	해외 창고 보관료
창고 작업비	입·출고료, 상·하차료, 작업료 등 (* 수출관련 발생비용에 한함)
수출국 내륙 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견본품 및 서류 운송비	EMS, DHL,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한 견본품 및 무역서류 운송비
물류주선(포워딩) 비용	물류운송주선업 관련 수수료 등

□ 세부내용

-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으로 계약·지급한 경우
 - CFR, CIF, CPT, CIP, DAT, DPU, DDP 계약조건 등
 - EXW, FCA, FAS, FOB 조건 중 수출자가 운임,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 등을 부담하는 특약(예: FOB+Shipping Fee 등)이 있는 경우
- 수출업체가 현지발생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수출업체가 견본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 우대사항

- 우대기준 충족 기업에 대해 지원한도를 최대 20% 범위에서 상향 적용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우대사항 신청 가능

우대조건	기준	우대사항 확인기준
수출성장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액 10% 이상 증가 기업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수출국가 다변화	2025년도 참여기업 중 수출국 증가 기업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국 수 증가)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수출신고필증(세관)
긴급 수출위기 대응	2026년 3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기업	수출신고필증(세관)

[참고 : INCOTERMS 조건]

구분	조건	영문명	내용
운입 포함	CFR	Cost and Freight	운입 포함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입 · 보험료 포함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 보험료 포함 인도
	DPU(구 DAT)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기본 인도	EXW	Ex Works	공장 인도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지원절차

- 사업 신청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서류 접수
-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 지원신청 제외 대상여부, 지원가능 항목 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익월에 지원금 지급
 ※ 예시: 신청(10.1.~10.30.) → 서류검토(11.1.~11.5.) → 지원금 지급(11.12.)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18.(금) (17:00)
 ※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완료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ptp.or.kr>)

※ www.ptp.or.kr (포항TP 온라인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 ① 기업회원가입(필수) → ② 기업정보 및 신청정보입력 → ③ 첨부파일(신청서식) 업로드 → ④ 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예정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비 고	
필수 제출	1. 지원신청서	서식 제1호	
	2.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서식 제2호	
	3.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제3호	
	4.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증명서)	-	
	5. 생산자별 해당하는 서류 ①직접생산기업: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②OEM 생산기업: 위탁가공계약서**	* 500㎡ 미만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경우 **국내 위탁생산 증명 목적	
	6. 직전년도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7.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증명서)	-	
	8.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증명서)	-	
	9.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	
수출 비용	10. 수출신고필증	-	
	11. 선적서류	B/L(해상), AWB(항공), 운송장(특송)	
	12. 선적(물류운송)업체 인보이스	상업송장(C/D)과 혼동 주의	
	13. 수출 물류비 세금계산서	인보이스와 가격 일치	
	14. 이체확인증(신청기업→운송업체 이체내역)	계산서와 가격 일치	
	▶ [참고] 지원항목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국내 운송비(※수출진 관련)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국제 운송비	해상, 항공 (CARGO)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수출계약서, B/L(해상)또는 AWB(항공), 수출신고필증
		특송 (EXPRESS)	인보이스,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운송장(Tracking)
	창고비(해외 보관료)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국내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창고 작업비(※수출진 관련)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수출국 내륙 운송비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운송장
	물류주선(포워딩) 비용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은 기업이 운송업체로 직접 송금한 영수증 必			
※ 운송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며, 특송(EMS, DHL, FedEx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인보이스 및 결제증빙으로 갈음 가능			
※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서류는 해당 물류비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A4(210×297mm)로만 접수 가능하며 PDF 이외의 문서형식은 접수 불가

V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구분	주요 내용
지원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부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상태로 규제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예시) 도소매(무역)업 및 숙박, 요식, 운송,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임대업 등 ○ 어음 또는 유사한 결제수단으로 거래한 경우 ○ 내부 계열사 간 거래인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동일한 수출신고필증 건으로 타 사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 경우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 미상) ○ 신청서, 동의서, 협약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그 외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사항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한 수출 물류비에 대하여 다른 기관(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능하며, 향후 중복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부과 ○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 비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및 지급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 단순 견적서, Proforma Invoice, 내부거래 및 계열사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음

VI

문의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전략기업본부 기술사업화팀	장정희 과장	054)223-2219	jajh88@ptp.or.kr